국제교류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17.09.25
개정 2017.12.04
개정 2019.02.13
개정 2020.05.07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의 국제교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국제교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국제교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, 임기는 보직 임용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7.12.04., 2019.2.13., 개정 2020.5.7>

③ <신설 2017.12.04.><삭제 2019.2.13.>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해외대학과의 교・직원 및 학생 교류에 관한 사항
3. 해외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
4.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
제5조(사무) ① 위원회의 사무는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. <개정 2017.12.04., 2019.2.13.>

②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한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